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민 친화적, 합리적·탄력적 조직으로 전환
- 한시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구조정(△1단)

-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 : 존속기간 만료

□ 분장사무 조정

- 우량잡종의 생산·보급업무 농산사업소로 이관(안 제24조, 제46조)
 - 농업기술원 → 농산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관련사무 조정(안 제28조)
 - 환경측정망 운영 → 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
-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공급 업무 삭제(안 제46조)
 - 국가사무 환원에 따른 농산사업소 사무 조정
- 세종사무소 소관사무 범위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민 친화적, 합리적·탄력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량잡종의 생산 및 보급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농산사업소로 이관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측정망 운영 업무’를 ‘환경

측정망·경보제 운영'으로 변경하고, 국가사무환원에 따라 농산
사업소의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공급 업무'를 삭제하며, 세종
사무소의 소관사무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